

충청북도중·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1997. 7. 16
교육사회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7년 7월 3일, 충청북도교육감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1997년 7월 3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39회임시회 제2차교육사회위원회 (1997. 7.16)상정
심사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(중등교육국장 송대현)

가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중·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
- 특별장학생의 선발은 당해학교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추천된 특별장학생 후보자를 교육감 (중학생은 지역교육장)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중복 심의기능을 배제하고,
- 당해학교로 선발권한을 위임하고 특별장학생 선발에 관한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함

나. 주요골자

- 학교장이 특별장학생 후보자를 교육감에게 추천하여 선정하는 것을 학교장이 선정하도록 함 (안 제4조)
- 탈락자 발생시 승계 추천하여 교육감이 선정하는 것을 자체에서 승계선정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8조)
- 장학생추천서를 당해 학교장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변경함 (안 별지)

3. 검토보고요지 (전문위원 김영만)

- 학교장이 추천하고 교육감이 선정하던 특별장학생 선정을 학교장이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중복심의를 배제하고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및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9.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중·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- 신구조문대비표